

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
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8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87호로 2025년 8월 14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사항목 대상 구체화를 통한 행정집행 효율 증대 목표.

3. 주요내용

공사 적용대상에 ‘지하철건설 및 유지·보수공사’를 신설하여, 도로점용
기간 및 차로 점용 범위가 조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
수립 의무를 명문화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8. 14.~2025. 8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도로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, 그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, 현행 조례는 지하철 건설공사 및 유지·보수 공사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, “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”라는 포괄적 규정에 포함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철 건설 및 유지·보수 공사를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에 명문화함으로써,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3조(적용대상)**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적용 대상 공사에 ‘지하철건설 및 유지·보수공사’를 신설함.
 - 참고로, 제3조 본문에 따라 1개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“구도” 또는 점용기간이 2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) 이하의 “특별시도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“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지하철 건설 및 유지·보수 공사를 별도로 명문화하여, 교통소통대책

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이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,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도로법

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

2

도로법 시행령

제54조(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)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■ 도로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1. 1. 5.>

도로점용허가의 기준 (제54조제5항 관련)

4. 공사방법

가.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나.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,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.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,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.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,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